

빅데이터분석기사 응시자격 심사 서류제출 안내

(데이터자격검정센터)

□ 유의사항

- (유효기간) 모든 제출서류는 서류에 표시된 유효기간을 넘지 않아야 하며, 유효기간 표시가 없는 서류는 발급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함
(단, 학위기, 졸업장, 수첩형 자격증, 아포스티유 및 번역본 등은 유효기간에 제한 없음)
- (제출기한) 서류는 정해진 기간내에 제출해야 함
- (제출범위) 증빙하고자 하는 응시자격에 관한 서류만 제출
예: 응시자격 1) 대학졸업자 등 또는 졸업예정자는 학력관련 서류만 제출
응시자격 4)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 취득자는 자격관련 서류만 제출
응시자격 9) 4년 이상의 직장 경력자는 경력관련 서류만 제출)
- (심사기준일) 빅데이터분석기사 필기시험일까지 취득된 것만 인정
- (심사결과) 응시자격 서류를 미제출, 불완전제출, 허위기재하거나, 응시자격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필기합격예정자격 취소
- (결과통보) 심사결과는 휴대폰으로 개별 발송(카카오톡 또는 SMS)하며, 결과통보를 위해 데이터자격검정사이트(www.dataq.or.kr)의 등록 연락처 확인 요망

□ 제출기한 : **합격예정자 발표 차주 월요일~금요일 일과시간**휴일 등으로 변동가능

- 제출기한 내에는 이미 제출한 서류를 보완할 수 있으나, 제출기한이 지나면 서류를 제출하거나 보완·추가할 수 없음

- 제10회 빅데이터분석기사 필기시험 **예시**

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	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기간	심사 결과 개별 통보	실기시험 원서접수	실기시험	최종합격자 발표
'25. 4. 25.	'25. 4. 28. 10:00 ~ 5. 14. 18:00	'25. 5. 7. ~ 5. 14.	'25. 5. 19. ~ 5. 23.	'25. 6. 21.	'25. 7. 11.

- 제출서류를 근거로 응시자격을 심사한 후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며, 결과는 휴대폰으로 개별 발송(카카오톡 또는 SMS)

* 결과 통보(승인 및 보완제출 요망 등)를 위해 데이터자격검정사이트(www.dataq.or.kr)에 등록된 연락처 확인 요망

□ 응시자격

[응시자격]

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- 1) 대학졸업자 등 또는 졸업예정자 등 (전공무관)
- 2)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직장경력이 있는 사람 (전공, 직무분야 무관)
- 3)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직장경력이 있는 사람 (전공, 직무분야 무관)
- 4)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(종목 무관)
- 5)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(종목 무관)
- 6)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직장경력이 있는 사람 (종목, 직무분야 무관)
- 7)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2년 이상 직장경력이 있는 사람 (종목, 직무분야 무관)
- 8)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직장경력이 있는 사람 (종목, 직무분야 무관)
- 9) 4년 이상 직장경력이 있는 사람 (직무분야 무관)

※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제출 필요

[비고]

- 1) 대학 및 대학원 수료자로서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'대학졸업자 등',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'2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'에 해당
- 2) '졸업예정자'란 필기시험일 기준으로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
- 3) 학점은행제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 인정받은 사람은 '대학졸업예정자',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'3년제 대학졸업예정자',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'2년제 대학 졸업예정자'에 해당(이때 대학 재학으로 취득한 학점 이외의 자격증 취득, 교육수료 등 기타의 방식으로 취득한 18학점 이상 포함 필수)
- 4)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'대학졸업자', 그 졸업예정자는 '대학 졸업예정자'에 해당
- 5) '이수자'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
- 6) '이수예정자'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
- 7)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 취득자 및 3(2)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는 취득 및 졸업일 이후 직장경력만 인정

□ 제출서류

○ 공통사항

- 응시자격은 필기시험일까지 취득된 것만 인정
- 제출서류는 서류에 표시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, 유효기간 표시가 없는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있어야 함
예외: 학위기, 졸업장, 수첩형 자격증, 아포스티유 및 번역본 등은 유효기간에 제한없음
- 증빙자고자 하는 응시자격에 관한 서류만 제출
예: 응시자격 1) 대학졸업자 등 또는 졸업예정자는 학력관련 서류만 제출
응시자격 4)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 취득자는 자격관련 서류만 제출
응시자격 9) 4년 이상의 직장 경력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는 경력관련 서류만 제출)

○ 학력관련 제출서류

* 증명서류 온라인 제출은 전문업체를 통한 서비스이므로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며, 일부학교는 지원되지 않음

졸업자		① 졸업증명서(학위증, 학위취득일이 포함된 학위취득증명서 등)
졸업예정자, 최종학년재학	대학	① 재학증명서(휴학증명서, 재(제)적증명서 등)
	전문대학	
	평생교육 진흥원	① 학점인정 증명서 · (4년제) 106학점 이상의 학점인정증명서 · (3년제) 81학점 이상의 학점인정증명서 · (2년제) 41학점 이상의 학점인정증명서 (일반 정규대학/전문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 18학점 이상 포함 필수, 현재 일반 정규대학/전문대학 재학중인 자는 해당없음)

[주의사항]

- ※ 최종학년 이상 또는 조기졸업이 표시된 증명서만 인정되며 미등록 또는 학년표기가 없는 경우 불인정
- 불인정 예시사례
 - 예①: 6년제 대학 재학 중 4학년으로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불인정
 - 예②: 4년제 대학 재학 중 3학년으로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불인정
 - 예③: 2년제 대학 재학 중 1학년으로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불인정

○ 경력관련 제출서류

구분		4대보험 가입자	4대보험 미가입자
일반 사업장	자영업자	① 경력증명서, ② 사업자등록증명원	
	피고용인	① 경력증명서 ※ 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인정 ② 4대보험 가입확인서 ※ (4대보험)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으로 재직기간 전체가 확인되어야 함	① 경력증명서,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③ 동일직업 종사자(사업주 제외)의 사실확인서 ※ 사실확인서에 입증자의 신분증 사본 필요
폐업한 사업장	자영업자	① 경력증명서, ② 폐업사실증명원	
	사업주가 있는 경우	① 경력증명서, ② 4대보험 가입확인서 ※ (4대보험)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으로 재직기간 전체가 확인되어야 함	① 경력증명서, ② 폐업사실증명원 (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동일직업 종사자(사업주 제외)의 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) ※ 사실확인서에 입증자의 신분증 사본 필요
	사업주가 없는 경우	① 경력증명서, ② 4대보험 가입확인서 ※ (4대보험)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으로 재직기간 전체가 확인되어야 함 ③ 동일직업 종사자(사업주 제외)의 사실확인서 ※ 사실확인서에 입증자의 신분증 사본 필요	① 경력증명서 ② 해당업체와의 계약서 사본 ※ 사실확인서에 입증자의 신분증 사본 필요
프리랜서 계약직	자영업자	① 경력증명서, ② 사업자등록증명원	
	사업주가 있는 경우	① 경력증명서, ② 4대보험 가입확인서 ※ (4대보험)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으로 재직기간 전체가 확인되어야 함	① 경력증명서,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③ 해당업체와의 계약서 사본 (계약서가 없는 경우 동일직업 종사자(사업주 제외)의 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) ※ 사실확인서에 입증자의 신분증 사본 필요
	사업주가 없는 경우	① 경력증명서, ② 4대보험 가입확인서 ※ (4대보험)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으로 재직기간 전체가 확인되어야 함 ③ 동일직업 종사자(사업주 제외)의 사실확인서 ※ 사실확인서에 입증자의 신분증 사본 필요	① 경력증명서 ② 동일직업 종사자(사업주 제외)의 사실확인서 ※ 사실확인서에 입증자의 신분증 사본 필요
군경력자	사병, 장교, 부사관	① 병무청 발급 병적증명서 (각 군 참모총장 발급 경력증명서 또는 부대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또는 국방부 발급 장교 자격표)	

[주의사항]

※ 경력증명서

-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(재직기간, 소속, 직위 및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력증명서)를 발급받아 제출
-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제공양식(첨부2) 작성
(경력증명서에 반드시 사업주 날인이 필요하며, 날인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 사실확인서(첨부3) 제출)
-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관련 서류 등은 각각 발급 또는 작성
- 경력사항 진위에 관하여 발급처에 별도 확인할 수 있음

※ 사실확인서: 제공양식(첨부3) 사용

○ 해외학력 및 경력 관련 제출서류

대상	아포스티유 협약국* (미국, 일본, 영국, 호주, 중국 등)	아포스티유 미협약국
외국학력취득자 (졸업, 재학, 이수증명서 등)	① 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장 등 증빙서류 ② 아포스티유 ※ 해당 국가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에 신청·발급 ※ (중국) 공자아카데미 발급 학력 인증보고서 번역본 또는 한글본 제출 가능 ※ (영국) 주한영국문화원 발급 국가자격시험 응시용 학력확인서 제출 가능 ※ 한글로 발급된 학력확인서는 별도의 번역 필요하지 않음 ③ 번역사를 통한 ①, ②의 번역본 ※ 전문번역사를 통한 번역 필수	① 학력 인증보고서 ※ 재외공관장 또는 국내대사관 확인 필수 ② 번역사를 통한 ①의 번역본 ※ 전문번역사를 통한 번역 필수 ※ 한글로 발급된 학력확인서는 별도의 번역 필요하지 않음
외국업체경력자 (경력증명서 등)	· 경력증명서 및 번역본 ※ 절차 - 해당 국가 공증사무소에서 아포스티유 공증 받음 - 전문번역사를 통해 번역하여 제출	· 경력증명서 및 번역본 ※ 절차 - 해외공관장 또는 국내대사관의 확인을 받음 - 전문번역사를 통해 번역하여 제출

*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확인: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
https://www.oka.go.kr/web/content.do?menu_cd=00009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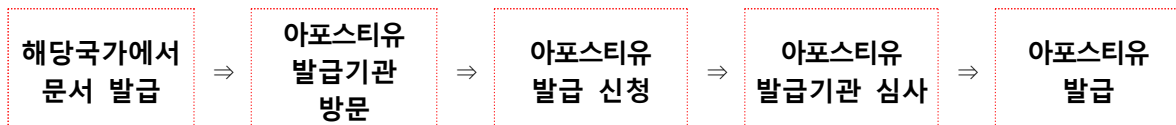
[주의사항]

- 졸업학위에 대한 상세한 정보(학위명, 전공명, 이수기간 등) 명시 필요
- 학년 확인이 어려운 성적증명서만으로는 불인정
- 서류 유효기간에 제한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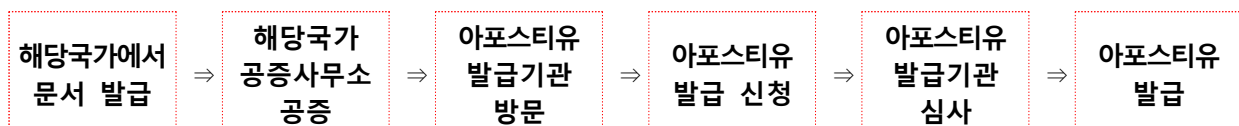
※ 연기신청 : 제출서류 준비로 인하여 기한 내에 제출이 불가한 경우 '외국학력(경력)서류 제출 연기 신청서'(첨부1)를 제출하여 서류 자격심사를 연기할 수 있으나 당 회차 실기시험 응시 불가

< 문서별 아포스티유 발급방법 >

- 공문서(국,공립대, 공무원 경력증명서 등) 아포스티유(Apostille) 발급 발급절차



- 사문서(사립대, 사기업 경력증명서 등) 발급 발급절차



○ 자격관련 제출서류

자격취득자	① 자격증 원본 (자격취득사항확인서 등)
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[주의사항]

- 자격명, 등급, 자격번호, 취득일이 모두 확인되어야 하며, 합격확인서는 불인정
- 수첩형 자격증 및 카드형 자격증은 유효기간에 제한 없음
- 상장형 자격증 및 자격취득사항확인서는 표시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, 유효기간 표시가 없는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있어야 함

□ 제출방법

- 데이터자격검정사이트(www.dataq.or.kr⇒마이페이지⇒결과확인⇒증빙자료)에 응시자격별로 별도 항목에 각각 나누어서 업로드

학점관련 항목	경력관련 항목	자격관련 항목	기타 항목
- 졸업증명서 - 학위증 - 학위취득증명서 - 졸업예정증명서 - 재(휴)학증명서 - 재(제)적증명서 - 학점인증증명서 - 기타	- 경력증명서 - 4대보험가입확인서 - 사업자등록증명원 - 폐업사실증명원 - 사실확인서 - 계약서 사본 - 자격표 - 기타	- 관련 자격증 -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	- 외국학력(경력) 서류 제출 연기신청서

[주의사항]

- 업로드 관련 세부사항(각 항목당)

파일수	용량	형식
1개	1MB	pdf, gif, jpg, jpeg, png, bmp, zip, rar

- 하나의 항목에 여러개의 파일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출 파일을 모아 압축(zip, rar)하여 1개의 파일만 업로드해야 하며, 압축파일의 업로드 가능 용량도 1MB이므로 파일 크기 조절에 유의
- 제출서류 등을 휴대폰 등으로 촬영하여 업로드 할 수 있으나 기재내용과 직인 등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며, 확인되지 않는 경우 반려될 수 있음
- 오제출, 압축 등의 문제로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완전제출에 해당하여 필기합격 예정자격을 취소되므로 업로드 후 반드시 확인 요망

□ 관련문의: 1877-9817